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서미화·이성윤·김예지
김선민·이수진·이정문
허성무·용혜인·소병훈
이학영·손 술·전종덕
정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,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요 하역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원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. 또한 공원의 보행동선이나 이용시설, 편의시설 등이 설치·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,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, 「도시공

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·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).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“공원시설”을 “공원시설과 자연생태,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또는 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을 설치·변경하는 공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원을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거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에 따른 공원계

획의 변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을 설치·변경하는
공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(이하 “의무인증시설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.	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공원시설과 자연생태,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공 원시설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·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<u>공원시설</u>	

<u><신 설></u>	<u>1의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을 설치</u> <u>· 변경하는 공원</u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